

## ◎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4-490호

「유아교육법」 제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(폐쇄명령) 후 「유아교육법」 제30조의2, 「행정절차법」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(건물철거)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6일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

###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- 공고사유: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
- 공고기간: 2024. 12. 17.(화) ~ 2024. 12. 31.(화) (14일간)  
(※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)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| 예정된 공표의 제목    |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  |  |
|---------------|--|--|
| 당사자           | 성명(명칭)   | (주)준성종합개발 대표이사 이*홍   |
|               | 주소   |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99번길 16, 1층 준성자연유치원<br>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75, 302(주교동) ㈜준성종합개발<br>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44(내유동) ㈜준성종합개발 대표이사 |
|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|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(설립자 부존재, 체육장 및 교지 면적 인가기준 미충족, 교육용 재산의 설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)      |  |
|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  | 준성자연유치원 폐쇄명령   |  |
|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|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,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 제5조제2항, 제6조, 제7조제1항, 「유아교육법」 제32조제1항 |  |
| 공표기간          | 3년   |  |

#### 4. 안내사항

- 유아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유아교육법 위반사실 공표를 사전통지드리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,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의견제출장소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,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1층 기획경영과
  - 의견제출기간: 2024. 12. 17.(화) ~ 2025. 1. 7.(화) 18:00(우편도착분 포함)
-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위반사실이 공표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(☎031-900-29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의견제출서 1부. 끝.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|       |    |      |
|-------|----|------|
| 의견제출인 | 성명 |      |
|       | 주소 | 전화번호 |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견제출<br>내용 |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당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(명칭)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<br><br>(전화번호: ) |
|            |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귀하

### 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